

의안번호	제 281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
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5월 3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8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5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재난대응 및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·조정과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 (안 제3조)
- 지원단 구성, 단장임무 및 실무팀 편성 (안 제4조~제6조)
- 재난상황 공유·보고, 자원봉사활동의 평가·기록 (안 제7조 및 제8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충청북도지사는 도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) 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재난발생 장소 및 소관 시·군 지원단의 위치
2. 소관 시·군 자원봉사자의 규모
3.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4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
제4조(구성)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단의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은 충청북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「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(이하 “자원봉사센터”라 한다)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.

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
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3. 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4.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5조(단장의 임무)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·지원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

수 있다.

1. 상황총괄팀
2. 대외협력팀
3. 현장과견팀
4. 자원지원팀

5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
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,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
② 대책본부장은 「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.

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8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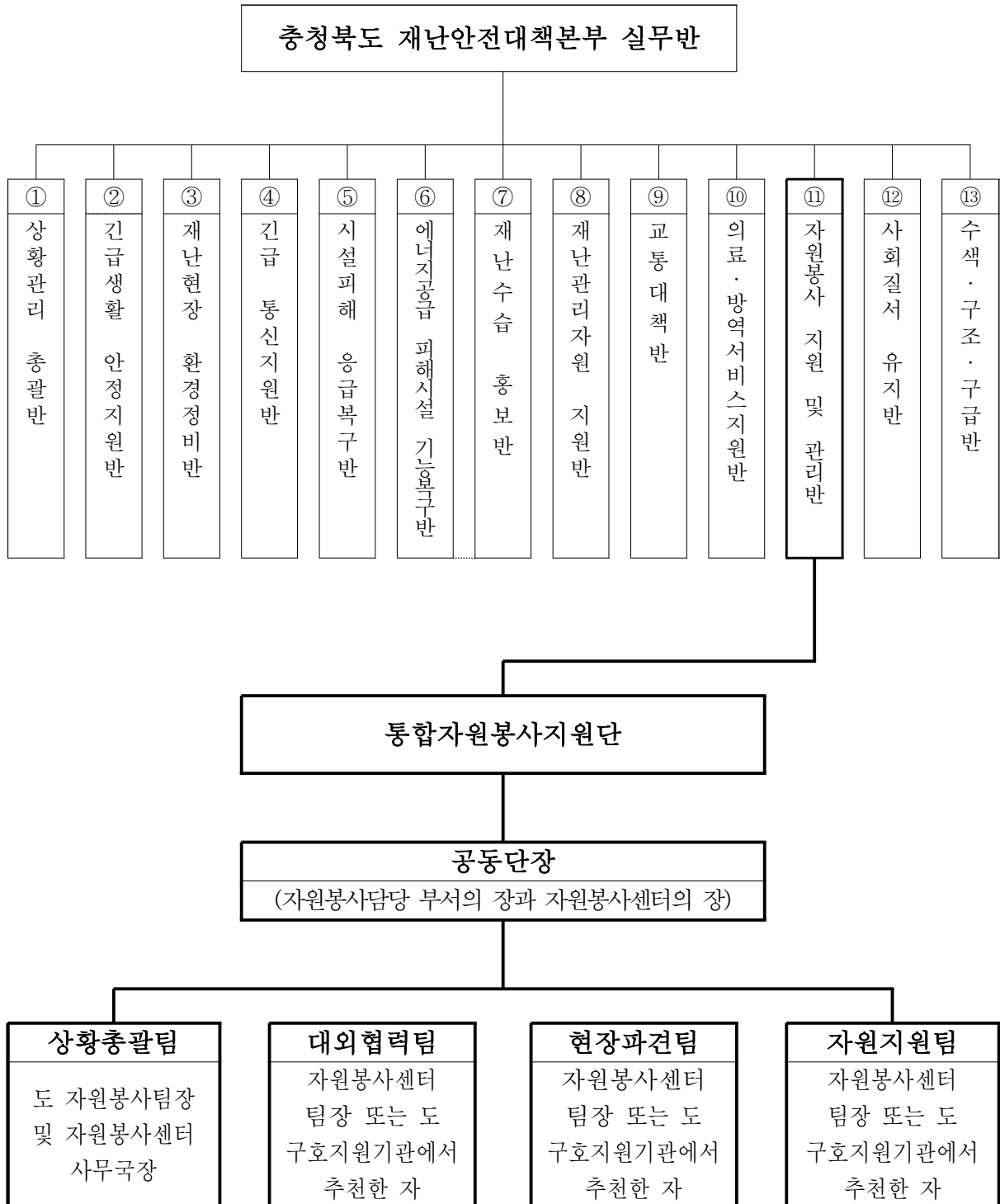
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·군 지원단의 인력·자원 지원 현황, 시·군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·영상,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충청북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(제6조제2항 관련)



[별표 2]

충청북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(제6조제2항 관련)

구 분	구 성	업 무
단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단장: 자원봉사 담당부서의 장, 자원봉사센터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업무 총괄·조정
상황 총괄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팀장: 자원봉사 담당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· 팀원: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, 자원봉사센터 팀원, 구호지원기관 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황 보고서 작성 및 지대본 보고 ·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및 행·재정적 지원 · 시·군과 중앙기관과의 연계업무 ·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 수요 파악
대외 협력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팀장: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· 팀원: 자원봉사센터 팀원, 구호지원기관 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·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·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· 시·군 및 타기관 단체간 협력 지원
현장 파견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팀장: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· 팀원: 자원봉사센터 팀원, 구호지원기관 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·군 지원단 파견 · 지원단 현장 파견 상황관리·보고 및 기타 현장 지원업무 추진 · 자원봉사자 수송지원 · 임시대피소 운영지원
자원 지원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팀장: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· 팀원: 자원봉사센터 팀원, 구호지원기관 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동원 가능한 보유 자원 재난 현장 배분 및 관리 · 자원봉사자 관리·지원 및 안전조치 · 타시도 재난자원 요청 및 관리

※ 단장은 재난의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팀의 편제와 구성인원 및 담당 업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 ② 시·도대책본부 또는 시·군·구대책본부(이하 “지역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되며,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7조의2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원봉사자의 모집·등록
2.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
3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
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6.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

제15조(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 ④ 특별시·광역시·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6. 시·군·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·조정·지원

□ 재해구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“구호지원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가.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

나.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

다. 그 밖에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·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□ 재해구호법 시행령

제1조의3(구호지원기관)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1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및 같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

2.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

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재난대응 및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·조정과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

2. 비용 발생 요인

-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시 지원단원에 대한 교육 및 구호물품, 긴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발생 가능

3. 관련조문 : 해당없음

4. 비용 추계결과

- 재정수반요인 :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시 소요예산
- 추 계 기 간 : 2023년부터 2027년부터 5년간으로 함
- 추 계 결 과 : 25,000천원(도비 100%)
 -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(지원단 교육 및 간담회, 구호물품 등)
-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- ▶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신규로 수반되는 사항은 없음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행정국 도민소통과장 신용찬

